

□ 집중취재/생산성 향상점검·육계출하 후 대금 결제 동향

회사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제일을 조정하고 있다

□ 취재/이유혁 기자

현재 국내에서 육계 출하 후 상인이나 계열주체 층에서 대금 결제하는 것이 중 구난방이고 계약서상에 결제 일은 빠르게 되어 있지만 막상 결제를 해줄 때에 실행 과정에서 계약서 상의 결제일보다 늦게 나타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관계로 지역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부·분회를 통하여 알아보았고, 계열주체에서 대금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국내 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 국내에서 결제와 관련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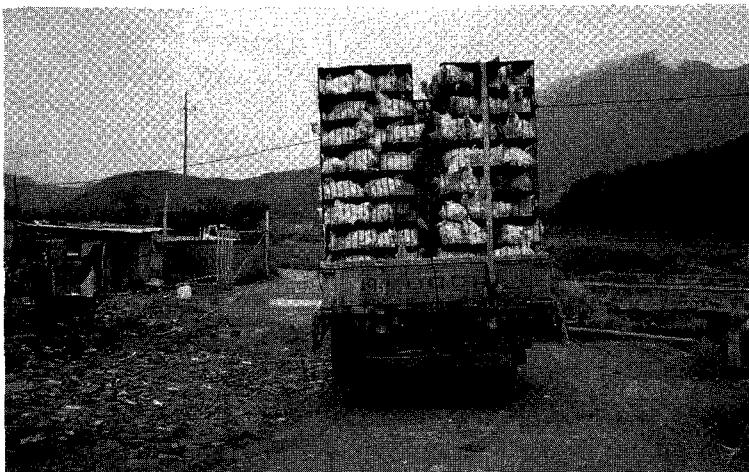
계열주체의 경우 농가에게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반면 농가는 계열주체가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농가의 말은 대금 결제가 지연되면서 초생추 입추가 늦어지고 사료 및 약품 대금 지

급 지연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상인 중에 부도가 나면 대금을 받을 곳이 없어져 같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 없었던 어음 결제가 계열주체가 생기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상인들도 어음



으로 결제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해서 자금의 회전이 그리 좋지 못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계열주체에서는 3년 전의 육계 생산비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곳도 여러 지역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부·분회 현황

① 용인

일반사육하는 농가는 상인들이 어음으로 결제를 할 때 30일에서 45일 사이이고, 현금으로 결제를 할 때에는 2달 정도 걸리고 있으며, 계약사육을 하는 농가에서도 일반사육을 하는 농가와 거의 비슷한 기간에 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② 이천

일반사육을 하는 농가는 20~30일에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계약을 하는 곳에서는 최하 20일에서 최고 45일까지 현금으로 할 때도 있고 어음으로 할 때도 있다.

③ 포천

일반사육을 하는 곳은 서울 상인에게 출하를 하면 보통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현금으로 결제가 되고 계약사육을 하는 곳도 일반사육을 하는 곳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④ 가평

일반사육을 하는 농가는 상인이나 유사 계열업체로 출하를 하는데 상인에게 출하하는 곳은 13~15일에 현금으로 수령하고 유사 계열업체는 15~30일에 상인과 같이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계약사육을 하는 곳은 계열업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A계열업체는 20~4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여기에 kg당 10원의 유통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수령하고 B계열업체는 70일 어음을 주는데 결제가 늦어지는 관계로 이자 조로 약간의 웃돈을 주고 있는 형편이다.

⑤ 천안

천안은 거의 100% 일반사육을 하고 있는 관계로 계약사육을 하는 농가는 조사할 수가

없었으며, 일반사육농가는 출하 후 결제는 보통 40~60일이며 심한 경우 3개월 이상 되는 어음으로 결제를 받고 있으며 현금으로 받을 때는 kg당 30원 정도의 유통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수령하고 있다.

⑥ 서산

서산도 마찬가지로 계약사육은 없고 거의 100% 일반사육을 하는데 천안보다는 결제 일이 매우 빨라 출하 후 15일에서 30일이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⑦ 홍성

홍성은 서산보다는 조금 길고 천안보다는 조금 짧은데 기간은 30일에서 45일 사이에 현금으로 수령을 하고 있다.

⑧ 충주

일반사육을 하는 경우 20~30일에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 있으며, 계약을 하는 경우 빠른 곳은 10일에서 45일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⑨ 진천

진천지역은 5개 계열주체와 연계되어 있는 100% 계약사육

표 1. 지역별 사육방식에 따른 대금 결제기간

	용인	이천	포천	가평	천안	서산	홍성	충주	진천	청주	양평	의정부	논산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일반사육	30~45	20~30	15~20	13~15	40~90	15~30	30~45	20~30		90일이상	30일이상	60일이상	20~30	60~70	15일전후	10~15	60일	35~40	
계약사육	60	20~45	15~20	20~70					10~45	30~70	20~30	15~30	60일이상	20	15~60	15일이상		60일	
유사계열				15~30						60~90					45일이상				

표 2 지역별 대금 결제 방법

	용인	이천	포천	기평	천안	서산	홍성	충주	진천	청주	양평	의정부	논산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일반 현금	○	○	○	○	○	○	○	○		○	○	○	○	○	○	○	○	
사육 어음	○			○					○		○	○	○		○			
계약 현금	○	○	○	○				○	○		○	○	○		○			
사육 미음	○	○		○				○			○		○					

지역으로 빠른 업체는 출하 후 3일이면 현금 수령이 가능한 반면 최고 70일 이상 되는 어음으로 수령하는 곳도 있다.

⑩ 청주·청원

이 지역은 일반사육을 하는 곳이 3개(유색계) 농가고 나머지는 계약사육을 하고 있는데 일반사육을 하는 농가는 대금 결제를 3개월 이상의 결제를 받고 있고, 1만수를 사육할 때에 올인올아웃을 시키지 못하고 출하하는데 5일 이상이 걸리고 있는 반면, 계약사육을 하는 농가는 계약서 상에는 15일 이내지만 20~30일에 대금 결제가 가능하고, 지방 유사 계열업체는 2~3개월 어음으로 결제를 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⑪ 양평

양평지역에서 일반사육을 하는 농가는 출하 후 한달 이상 대금 결제가 지연되고 있는 반면 계약사육을 하는 곳에서는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업체마다 다르게 결제를 하고 있다.

⑫ 의정부

계약사육을 하는 농가가 많은 이지역은 결제 기간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최하 일주일에서 최고 2개월이 되는데 2개월 이상 되는 곳은 거의가 어음으로 결제를 받고 있으며, 짧은 곳은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 일반사육을 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2개월 이상의 어음으로 결제가 되어 있고 계약사육을 할 때는 2개월 이하로 결제를 할 때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⑬ 논산

일반사육은 상인이나 지역 유통 업자, 또는 계열주체에 넘기는데 상인이나 지역 유통 업자에게 넘기면 보통 20~30일에 현금과 어음으로 결제가 되고 있으며 계열주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 곳은 20일이면 결제를 받을 수고, 유통 업체에서 계열업체로 갈 경우 45일 어음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⑭ 전북

일반사육이나 계약사육 모두 어음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유통회사로 출하를 할 경우는 60~70일, 계약사육의 경우는 15~60일로 계열주체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⑮ 전남

일반사육을 하는 농가는 출하 후 평균 15일이면 대금 결제가 나고 있으며, 계약사육의 경우는 이보다 약간 늦게 결제를 하고 있다.

⑯ 경남

경남의 경우는 충남 일부 분회와 마찬가지로 100% 일반 사육 농가로 육계 출하 후 10~15일이면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 있다.

⑰ 경북

대금결제시 현금은 거의 없고 상인이나 계열주체 모두 60일짜리 어음으로 결제를 하고 있으며 일부 현금이 계약을 하는 농가에서 돌고 있는 형편이다.

20여개의 농장을 한 상인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인이 부도가 나면 많은 농가가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확률이 매우 높다.

⑱ 제주

제주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육지와 달리 섬이라는 특수 지

표 3. 계열업체에서의 대금 결제 방법

	M	D	Y	F	C	HA	HAN	HAE·W
계약서상	10~15	10일			15일내			
실 제	10~15	15일	60일	30~90	15~30	20~30	60~90	15일내
결제방식	현금	현금	어음	어음	어음·현금	현금	어음	현금

Y사 : 유통업자에게 kg당 10원의 유통비 지급

HA사 : 어음의 경우 출하에서 도계가 끝나면 10일 이후 찾을 수 있음

HAN사 : 결제가 긴 관계로 약간의 웃돈을 주고 있음

역이다 보니 농가들이 돈을 출자하여 도계장을 만들고 출자한 돈만큼 일정 양의 육계를 출하하여 그것이 다 팔리는 시점(35~40일 정도)에서 현금으로 대금 결제를 하고 있다.

3. 계열주체들의 대금 결제 방식

① M사

계약서 상에는 대금 결제가 10~15일 사이며 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제는 이 기간에 비교적 잘 맞추어 주고 있다.

② D사

계약서 상에는 10일이나, 실제는 이것보다 약간 늦은 15일 정도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

③ Y사

계약을 할 때에 60일 어음으로 하고 있으며 유통 업자에게 kg당 10원의 유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④ F사

어음으로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90일까지 주고 있다.

⑤ C사

현금과 어음을 모두 주고 있으며 기간은 15일에서 한 달 이내에 결제가 난다.

⑥ HA사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육계 출하 후 20~30일이면 결제가 되고 있으며 어음으로 주는 경우는 작업 후(출하에서 도계까지) 10일이면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⑦ HAN사

2~3개월 어음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관계로 약간의 웃돈을 더 주고 있다.

⑧ W·HAE사

이 두 업체 모두 계약서 상의 기일인 15일 이내에 모두 결제를 해주고 있다.

4. 방안

자금 사정이 안 좋아도 계

약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계약 불이행으로 늦은 만큼의 이자를 물리는 방안이 마련되어 할 것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어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계열주체는 자금을 사업 확충에만 사용이 편중되어 대금결제는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로 기일을 조정하고 있다.

물론 결제를 빨리 해주고 안 해주고는 자금여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실에서 보건대 일부 계열주체나 상인들이 농민에게 제때에 지급해야 할 자금으로 계약의 협정을 악용하여 유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즉 계약사육 농가나 일반사육 농가들은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인이나 계열주체들이 결제를 빨리 해주어야 생산 성도 높이고 육계 농가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데 반해 대금결제를 회사 형편에 따라 임의로 조정을 하고 있어 농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 14]